

'21 사회적경제 주요사업 안내

협동조합 활성화 사업



기획재정부

목 차

- 1 협동조합 개요
- 2 사업목적
- 3 사업내용
- 4 추진일정 및 참여방법
- 5 시행기관 및 문의처



◆ 협동조합의 정의 및 특징

국제협동조합연맹(ICA) :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

협동조합기본법 (제2조 정의) :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· 생산 · 판매 ·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,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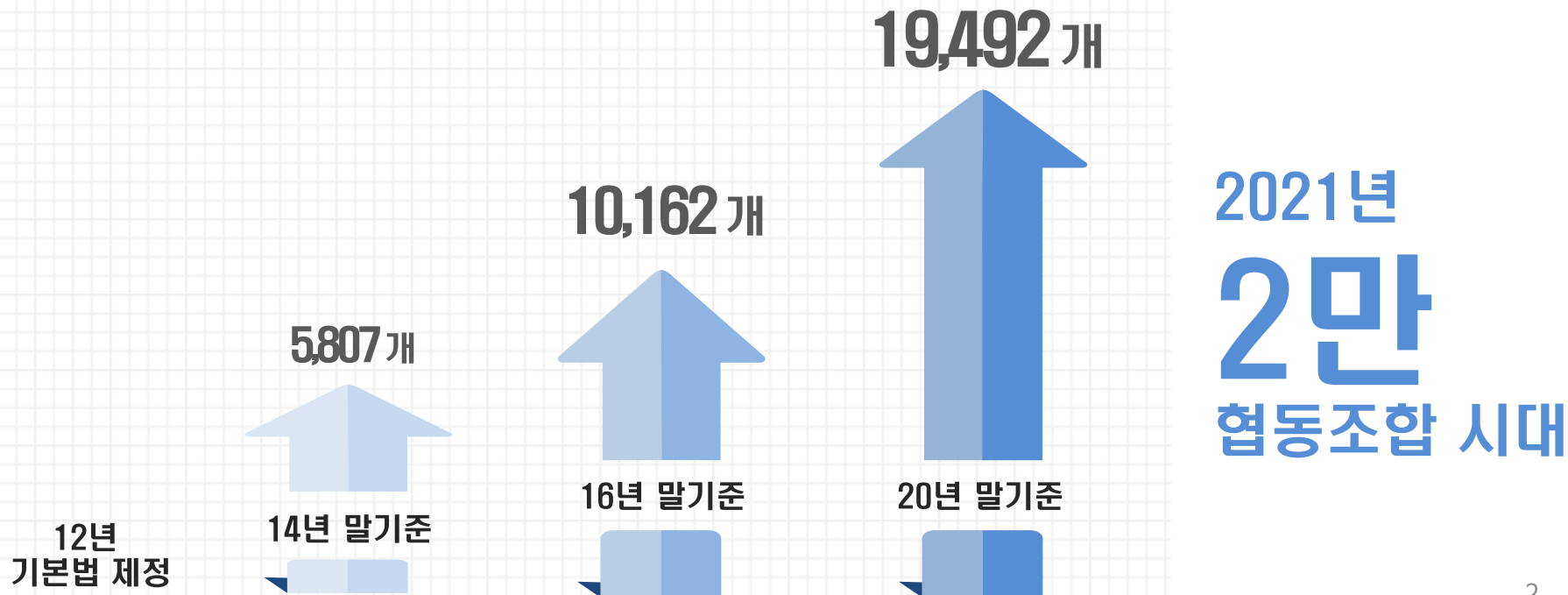


조합원들이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
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,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

1. 협동조합 개요

협동조합 활성화 사업

◆ 협동조합 현황 (2020년 말기준)



2. 사업목적

협동조합 활성화 사업

사업근거

협동조합기본법 및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(2012년 제정)

목적

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,
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건실한 협동조합 육성

지원대상

협동조합 종사자 및 협동조합 창업희망자 등

사업구조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사업(교육, 홍보, 설립운영지원 등)과
기획재정부 직접수행사업(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운영, 기타 운영비 및 연구비)으로 구성

교육

홍보

설립운영
지원



◆ 협동조합 교육 사업

[예산: 21년 8억 7,300만원]

협동조합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
협동조합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

◆ 교육 사업 주요사업



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

건
보

전문 상시상담 기관 운영

건
보

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양성

건
보

공무원, 공공기관 직원 인식제고 교육

건
보

◆ 주요내용

- 협동조합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협동조합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
[예산: 21년 8억 7,300만원]

◆ 주요사업

-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: 판로, 마케팅, 인사 등 전문경영기법과 업종특화 교육 등 실시
- 전문상시상담기관 운영: 법률, 노무, 회계, 조직변경 및 합병 등 협동조합 설립운영시 발생하는 주요문제에 대한
전문가 상담 제공
-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양성과정: 협동조합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실시
- 인식제고 교육: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협동조합 법령 및 관리감독 절차 등 교육



◆ 협동조합 홍보 사업

[예산: 21년 3억 4,000만원]

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개최, 협동조합 홍보매체
운영 등을 통해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
제고 및 공감대 확산 도모



◆ 홍보 사업 주요사업

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

아아
노

온·오프라인 협동조합 홍보

아아
노

협동조합 홍보 시스템 운영

아아
노

◆ 주요내용

-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개최, 협동조합 홍보매체(뉴스레터, SNS 채널 등) 운영 등을 통해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 도모
[예산: 21년 3억 4,000만원]

◆ 주요사업

-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(매년 7월 첫째주 토요일): 기념행사 개최를 통해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공익적 가치와 역할을 확산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
- 온·오프라인 홍보: 온라인 뉴스레터, SNS 채널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협동조합의 정체성 및 정부정책 홍보, 국내외 협동조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- 협동조합 홍보 시스템 운영: 협동조합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을 통해 협동조합 관련 정책 정보 적시 제공

* 협동조합 홍보 시스템: www.coop.go.kr



◆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사업

[예산: 21년 44억 9,900만원]

협동조합 창업 활성화 및 판로지원, 종사자의 역량 강화,
경영공시의 투명성 개선 등을 위한 사업지원

◆ 설립운영 지원 사업 주요사업



권역별 중간지원기관 운영

지원
비율
100%

협동조합 관리감독 지원

지원
비율
100%

청년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

지원
비율
100%

협동조합 판로지원

지원
비율
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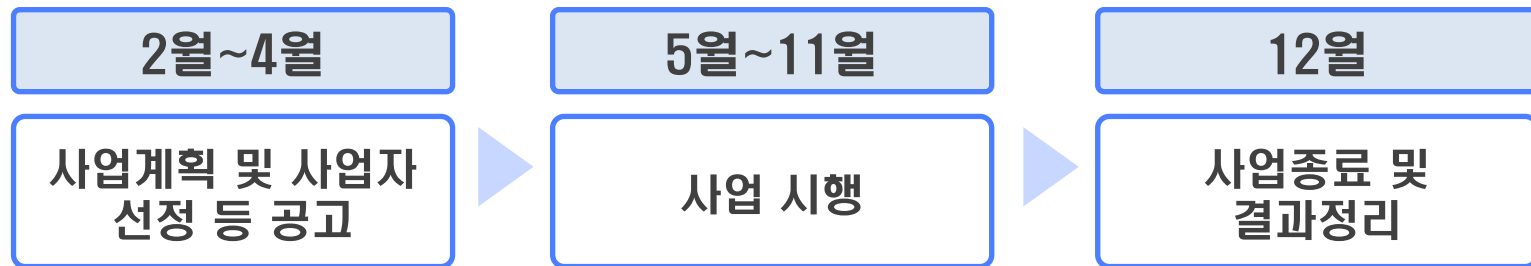
◆ 주요내용

- 협동조합 창업 활성화, 종사자의 역량 강화, 경영공시의 투명성 개선 등을 위한 사업지원
[예산: 21년 44억 9,900만원]

◆ 주요사업

- 중간지원기관 운영: 시도별로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하고, 협동조합 대상 설립운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
- 관리감독 지원: 인가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점검,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대상 관리감독
- 청년창업지원사업: 청년 창업지원 활성화 및 협동조합 저변 확대를 위해 예비 창업팀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, 설립후 경영 코칭, 멘토링 등 사후관리도 함께 지원
- 협동조합 판로지원: 협동조합 상품 품평회 및 팝업스토어 개최, 협동조합 제품 홍보, 생협 등과 협업한 유통채널 확대 등 협동조합 제품의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

◆ 추진일정



◆ 참여방법

협동조합 홈페이지(www.coop.go.kr)에 공지된 사업공고사항을 확인하여 희망사업에 지원

◆ 기획재정부 : 협동조합과 이우석 사무관(044-215-5932)

◆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
- 설립지원팀(창업 문의): 031-697-7731
- 협력운영팀(교육, 판로 문의): 031-697-7741

감사합니다.
